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09.06. 폐지 2026.03.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대학 전체 발전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 활용관리
- 재정지원사업 수행 결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유도
- 기타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와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부서 부서장 및 팀장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이 결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0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폐지한다.